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당하게 제한

행정기관의 일방적 횡포, “도가 지나치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면 영위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발생 및 지역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의 일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97호)’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세부지침(남양주시 예규 제30호)’을 자치예규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동 예규에 따르면 「건폐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

정에 따른 허가조건 이외에 별도로 ‘주민동의’ 및 ‘진입로 확보’ 등을 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예규는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전혀 관련 없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97호)’을 근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함에 따른 기업활동의 침해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 및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허가에 부대되는 조건 등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 남양주시가 건폐법의 허가기준과 별도로 자치사무로서 ‘주민동의’ 절차를 ‘허가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의 예규의 전면개정 및 해당항목의 삭제를 명령하였다.

남양주시와 유사한 사례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행위를 향후 3년간 제한하겠다고 공고 한 바 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행사로
경제적·행정적 피해 우려

-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허가사항 제한

내용인 즉, 「폐기물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제30조, 동법 제44조의2 「건폐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신고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률 및 제도 등을 제·개정함은 물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은 이미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경우 「건폐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규모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및 타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주민의 피해예방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적정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행정사항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허용보관량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허가까지도 제한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법령의 근거없이 관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편의 및 민원만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자체 규정 및 민원만을 이유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을 물론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것

으로 해당규제에 대하여 철회권고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일부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의 관련법에 대한 미숙지 내지 충분한 검토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탁상행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련 담당자들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규제를 만들고 있어 행정적 낭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가 있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시정요청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기획단 등 상급기관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민원제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